2004. 6.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



자 치 행 정 국
회 계 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4. 6.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검사위원의 선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 사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

2. 결산내용 요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예산현액 : 383,323,832,000원**

구 분	금 액(원)	비 율(%)	비 고
수 납 액	377,911,159,160	98.6	
지 출 액	260,116,450,130	67.9	

☐ **이 월 액**

구 분	이 월 액(원)	비 고
계	117,794,709,030	
명 시 이 월	38,513,509,000	
사 고 이 월	25,757,272,000	
계 속 비 이 월	12,917,984,000	자금없는이월 : 4,369,59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788,402,000	
순 세 계 잉 여 금	39,817,542,030	

3. 결산내용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의회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득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314,878,172,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68,445,660,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83,323,832,000원이며

□ 이중 수납액은 377,911,159,16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8.6%를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구 분	수 납 액 (원)	비 고
계	**377,911,159,160**	
지 방 세 수 입	29,297,914,700	
세 외 수 입	89,084,853,960	
지 방 교 부 세	100,007,700,000	
증 액 교 부 금	0	
지 방 양 여 금	20,467,143,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313,526,000	
국 도 비 보 조 금	59,423,043,000	
지 방 채	0	
공기업특별회계	15.773,393,100	
기 타 특 별 회 계	55.543,585,400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83,323,832,000원에서
지출이 260,116,450,13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7.9%이며
그 지출액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구 분		지 출 액 (원)	비 고
합 계		260,116,450,130	
일반회계	소 계	223,529,809,890	
	일 반 행 정 비	43,377,310,410	
	사 회 개 발 비	87,609,954,980	
	경 제 개 발 비	89,551,334,210	
	민 방 위 비	563,910,160	
	지원 및 기타경비	2,427,300,130	
특별회계	소 계	36,586,640,240	
	공기업특별회계	13,552,079,580	
	상 수 도	13,552,079,580	
	기타특별회계	23,034,560,660	
	수질개선 사업	13,965,121,370	
	주택사업	73,093,800	
	의료보호특별회계	676,075,450	
	영세민생활안정기금	49,500,000	
	주민소득지원사업	71,798,780	
	농공지구조성사업	179,936,100	
	문화마을특별회계	20,000,000	
	신월구획정리사업	4,695,184,180	
	도시교통사업	3,303,850,980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실수납액)대 세출예산액(실지출액)을 공제한 차인 잔액은 117,794,709,030원이며,
이 금액은 익년도(2004년)로 이월되었고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잉 여 금 내 역	금 액(원)	비 고
계		117,794,709,030	
명시이월비	지방행정정보망이중화 장비구입 등(167건)	38,513,509,000	
사고이월비	위림-시곡간도로확포장 공사 등(104건)	25,757,272,000	
계속비이월	자원관리센터조성 공사 등(2건)	12,917,984,000	자금없는이월 4,369,592,000원
국도비집행잔액	광천세월교수해복구 공사 등	788,402,000	
순세계잉여금		39,817,542,030	

□ 다음은 2003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보고서

□ 총 38 건

1)일반회계 17 건

○세입분야 : 3 건

○세출분야 : 14 건

2)특별회계 12 건

○세입분야 : 8 건

○세출분야 : 4 건

3)기 타 9 건(채권관리, 기타의견, 건의사항 포함)

□ 내 역 : 다음에 첨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계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일반회계 (세입분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91,51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4%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입은 8,681백만원(전년대비94.9%), 임시적 세입은 82,834백만원(전년대비127.4%)인 바 경상적 세입 중 이자수입이 전년도 보다 921백만원 감소 하였는 바 연도폐쇄 시점의 보유 예탁금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당년도 이자 발생분이 세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제천시 금고업무 취급계약 제6조의 보관 현금의 운용은 지급 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고가 취급하는 예금 중 정기예금 등 고율의 저축성예금으로 대체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나, IMF이후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자수입 결산액> • 2002년도 : 4,435,352,980원 • 2003년도 : 3,514,565,900원 • 차 액 : 920,787,080원 ○예탁금의 이자수입은 세입연도 구분을 만기 해지일을 기준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으며, 예금이자 세입증대 및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입분야)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 예산 (예술문화) 8,000천원은 2회추경에 세출예산(도비)으로 편성하고 '03년 9월 25일(문예86400-2184) 보조금 교부통지가 되었음에도 도비가 타시군으로 송금된 사실을 파악치 못해 연도폐쇄기까지 세입조치하지 못하고 결산작업시 발견하여 다음연도인 04년에 세입 조치하였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2003.10. 7)에 대한 세입세출 처리 과정에서 도비 보조금이 착오 배정(2003년 9월)되어 2004. 3월 세입조치 완료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시 교부결정 통지된 사항을 자금배정부터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 세입일자 : 2004. 3. 10 • 세입 귀속년도 및 세입과목 ⇒2003회계(일반회계, 도비보조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입분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02. 12. 11(사회 65240-538)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확정 통보되고 '03. 7. 7 송금내역통지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에 도비 5,664천원을 세입 미조치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사업부서, 세정과, 기획감사실)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음. ○특히, 세정과에서는 보조금송금내역통지서 접수시 예산 및 사업부서에 통보함은 물론 분기1회 확인대사를 하여 누락사례 예방.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등 국가 및 시도지원금의 지원과 농어민육성발굴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시행에 있어서 지원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지원 목적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자금 지급시 투명성 있게 처리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됨. ○보조금은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또한 정산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매년 지적된 사항이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각종보조금 지원시 관계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사업종료시 현지확인 등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정산(세금계산서, 은행의무통장입금표)을 통한 집행잔액 회수 등 보조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시행('04년) ○또한, 예산의 정밀진단 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table>
<tr><th>회 계 명</th><th>지 적 사 항</th><th>조 치 사 항</th><th>비 고</th></tr>
<tr><td>일반회계
(세출분야)</td><td>○ 일반운영비 및 행사비용 등 집행잔액 과다 발생
(단위 : 천원)
<table>
<tr><th>과 목</th><th>예산액(A)</th><th>지출액(B)</th><th>집행잔액(C)</th><th>비율(C/A)</th></tr>
<tr><td>기획관리,경상예산,
일반운영비</td><td>226,016</td><td>174,011</td><td>52,005</td><td>23%</td></tr>
<tr><td>기획관리,경상예산,
행사실비보상금</td><td>7,500</td><td>582</td><td>6,918</td><td>92%</td></tr>
<tr><td>기획관리,경상예산,
일반운영비</td><td>55,600</td><td>37,348</td><td>18,252</td><td>33%</td></tr>
<tr><td>기획관리,경상예산,
재료비</td><td>10,000</td><td>0</td><td>10,000</td><td>100%</td></tr>
<tr><td>기획관리,경상예산,
재료비</td><td>10,000</td><td>6,983</td><td>3,016</td><td>30%</td></tr>
</table>
또한 서울사무소 총 예산은 289,684천원으로 집행액은 275,47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208천원인 바, 전체운영비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일반운영비 예산 14,664천원중 집행잔액이 8,520천원으로 60% 가까운 것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임</td><td>○2003년도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2004년 예산은 전년대비 70%선에서 편성하였으며 금년 불용액 발생율을 수시 파악하여 매 추경마다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td><td></td></tr>
</table>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은 집행과정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매분기초 집행하지 않고 분기말에 집행한 것은 시설 운영에 많은 문제점 발생될 수 있음	○향후, 보조금 교부시기를 분기초로 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4/4분기 경로당 운영비 및 인료비를 분기말인 12월 31일 지급되어 경로당 운영이 지난하므로 운영비 및 인료비를 분기초에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보조금 자금배정 즉시 교부(분기초)토록 하여 경로당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재천시 이미지 광고탑을 설치하면서 총 126,000천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최초 설계시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준공 후 1년이 도래한 02년 8월에 10,500천원을 투자하여 전기설치공사를 하고 또 03년 5월에 기초 콘크리트보강공사에 16,193천원을 투자하여 시공하고 이미지 광고 인물 사진의 문제로 1,850천원을 투자하여 삭제하므로 예산 낭비 초래	○2001년 150백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토목·전기공사를 발주코자하였으나, 분리발주가 불가피하여 토목공사 준공 후 전기공사를 발주, 2002년 8월에 준공하게 되었으며, ○하천 제방을 이용하여 기초공사를 실시한 관계로 제방 및 콘크리트 구조물 보호를 위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인물사진이 지역관광이미지 제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삭제 변경하게 된 사업인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때에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의림지 겨울축제 (예산 100,000천원)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 미흡으로 눈썰매장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소요된 비용 33,863천원을 지출한바 있음. 이는 사전 사업계획 미흡으로 야기된 예산낭비 요인임	○의림지 겨울페스티벌을 추진함에 있어 겨울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눈썰매장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의 취소가 불가피하였는바, ○향후 축제관련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관광축제가 되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물태관광조성지구 사업으로 02년에 1억3천만원을 예산편성하고 03년도에 명시이월 하였다가 다시 04년에 91,560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의 분묘이장 예산을 당초예산에 60,000천원을 편성하고 4회 추경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전액 감액. 향후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향후 본 건과 같은 관광지조성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분묘)매입 추진 등 사업 시기가 유동적인 경우 '과목존치제도'를 적극 활용, 예산편성 추진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신복 배정자』를 SBS에서 재천촬영상에서 촬영하기로 하고 예산 2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04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의회의 명시이월 불승인으로 관련 예산 2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음	○당시 SBS의「야인시대」후속 드라마로 제작방영 예정이었던「실록 배정자」세트장 조성을 위해 시 지원금 20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드라마촬영에 적합한 부지선정의 어려움과 2만여평 규모의 부지 조성에 추가로 3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등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으로, ○향후 드라마촬영장 (확대)조성사업 등 방송사와의 공동사업추진에 있어 유치단계부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세트장 신규조성사업 등은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문화예술 관련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02년도에 100,000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이월한 후 03년도에 155,000천원을 예산편성하여 총 255,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집행액 45,000천원을 제외한 210,000천원을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발생케 하여 사업추진시 사전검토 철저.	○문화예술 관련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가운데 '지역문화 예술축제 발굴용역' 및 '의림지 정밀 학술조사 용역비' 에 대하여 제당절개 등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바, ○향후 학술용역 발주시 추진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홍광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군부대 사전 협조 및 도로포장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나, 검토 미흡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000천원(주민지원사)을 4회 추경에 삭감하였음.	○홍광초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군부대(37사단 및 육본)에서 협의 불가로 시기를 일실하여 연말에 우선 예산 삭감한 사항으로, 앞으로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조속히 추경 때 사업예산을 삭감, 변경하여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건설과에서 시행한 "청전 새터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같은 노선으로서 연계 시행하면, 상·하수도, 통행불편 등 시민불편 해소와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에도, 각각 분리발주 함으로써, 주민진정이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음. (시의회 진정서 접수사항)	○앞으로 같은 노선의 사업을 할 때는 종합 검토하여 같이 발주함으로써 민원예방 및 사업적정화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국·도유림 보상비 65,000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4회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사전검토 미흡임.	○국유림 보상협의는 산림청에서 재경부의 승인을 받고, 단양국유림관리사무소의 승인까지 받는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보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협의과정이 장시간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4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예산편성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제천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한 예산으로 단양 주민까지 대상으로 추진하였음. 향후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지역은 한강수계이나 본 사업을 실시 후 사업추진 결과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장에게 결과 보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단양군도 남한강에 유입되는 하천과 강이 있으나, 조사 감독하는 시민단체가 없으므로 인해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 일대의 환경 수질오염 원인이 되는 곳을 조사 감시하기 위하여 단양을 포함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제천지역으로 한하여 추진하겠음 ○제출 서식에 "수신처" 란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발송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한강수계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사업 추진 미흡 사회개발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운영, 보조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는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91,560천원을 확보하고 2회추경시 582,520천원을 증액 편성 (774,080천원으로 경정) 하였으나 전액 명시이월하여 사업계획수립 미흡	○제천종합운동장은 '88. 9. 5일 개장된 이래 15년이 넘도록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2년 소요공사비를 산출해본 결과 약 18억원의 많은 공사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음.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와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2003년도에 774,080천원(도비 4억원 포함)을 확보하였으나 전체 사업비중 일부만 확보된 상황으로 절대 부족하여 2004년도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음. ○단일공사 특성상 일괄입찰을 하여야 하므로 2003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본 공사는 2004.6월 공사집행하여 6.7일 착공, 10.4일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지적하신 사업계획수립 미흡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덕산면에서 시행한 부속창고 설치는 당초예산에 사업비 30,000천원을 확보했음에도 사업계획 미비로 사업을 집행치 못하고 4회 추경에 삭감하였으며, 테니스장 매입비 40,000천원과 시설비 30,000천원 역시 부지가 미해결되어 당초예산에 사업비 확보후 4회 추경에 삭감되어 계획수립 미흡	○사업추진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예산편성 및 집행토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바 법이나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존폐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1)주택사업특별회계 집행율 : 0.9% 2)농공지구특별회계 집행율 : 4.2% 3) 문화마을특별회계 집행율 : 3.3% 4)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집행율 : 8.0%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4.2%로 일반회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특별회계의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편성전 사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계속 존치하여야 하며, 앞으로 여유기금을 서민주택 확보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2)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테크노빌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 및 시설의 정비가 계속 필요하며, 전년도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나갈 것이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3)문화마을특별회계는 금성문화마을 조성사업 후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업장에 필요시 집행토록 되어 있는 바, 사후관리기간(20년)내에는 존치하여야 하며, 지구별 연차별 재투자 계획에 의거 집행토록 하겠음. 4)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영세서민의 소득증대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회계로서, 실정에 맞게 기금의 이자율을 5%에서 2%로 하향조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최대한 활용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중 전입금 예산 현액 5,951,523천원중 2,889,142천원을 수납하고 일반회계의 전출금 3,062,381천원을 년도폐쇄기까지 세입치 않는 등으로 인하여 자금없는 이월금액 4,369,592천원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2,186,000천원을 수납해야 함에도 적기에 수납받지 못함. (04. 5. 7 도에 요청 수납받음)	○2003년도 일반회계전출금 미세입분에 대하여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입(보조금, 전출금등)업무에 최저를 기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계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발생이 전년대비 28백만원이 증가 발생하는 등 매년 누적되고 있어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특단의 계획성 있는 노력이 요망됨.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검사일 현재 미수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 근황파악이 미진하므로 향후 미수납 발생 억제와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계획적인 업무 집행이 요망됨	○주택사업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별, 사유별 원인분석 및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 고질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경매처분 등을 통한 채권액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누증되고 있는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요망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속적인 독려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의료보호기금 장기체납자 중 당초 대출자들이 여전히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오래전 사망한 경우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한 실태 정밀조사후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정확한 체납사유분석을 통하여 대출자 사망 등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출분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저소득 생활 수급권자로서 본인이 보증인을 구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융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 현재와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는 마땅히 추진할 소득사업이 없어 융자신청이 저조한바,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융자실적을 높여나가도록 대책이 요구됨.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출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보증인을 담보하는 것임. ○읍면동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시중금리의 절반수준인 년2%의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음을 홍보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수납자중 장기체납자의 체납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태정밀분석 후 결손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장기체납자 3명중 2명은 신용불량자이며, 1명은 무소득자로 결손대상이라 판단되나,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결손근거가 없어 조례에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계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특별회계 (세출분야)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91.9%로 대부분 주민소득지원의 사업예산 및 예비비 성격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예산운용이 요망됨.	○2003년도 소득기금 대출 이자율이 5%로 높아 주민이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이자율을 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새로운 금리를 적용 소득기금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창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가 호전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됨.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로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농공지구 입주기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소적시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편의 시혜행정이 요망됨 ○강저농공단지 인도보수 공사외 농공단지 입간판 설치 5개소에 기업환경 개선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향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출을 늘리고 농공지구 내 기업유치를 위한 주요 인근 도로변 홍보판 설치 등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요망됨	○2004년도 예산편성시 심도 있는 논의 및 테크노빌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조성에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출분야)	○구획정리토목공사비 46억원이 적정히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농지전용분담금, 오수처리분담금, 환지청산교부금 등이며 연내공사지연으로 이월됨 -향후 철저한 업무집행으로 대민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요망됨	○신월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충북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1년10월 착공, 2003년12월 토목공사 등은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 기간인 2004년7월22일까지 환지 처분공고 및 사업완료 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기화로 인하여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 발생은 2001년도 170백만원, 2002년도 210백만원, 2003년도는 58백만원 감소하였으나 향후에도 미수납 해소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미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불법주정차 위법차량에 대하여는 직접 견인하여 과태료와 견인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절차를 개선하도록 요망됨	○단속된 차량 중 현지 여건에 따라 일부차량만 견인하고, 과태료 고지는 조례에 의거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발부하고 있으며 시민편의를 위하여 단속된 모든 차량을 견인 할 수는 없는 형편임.	
	○특히 견인차량(전년도1,800여대)에 대하여는 차량 반환시에 견인비 외에 과태료를 함께 납부되도록 하여 미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과태료는 처분전 행정절차법에 의거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어 즉시 징수는 곤란하며 납부의사가 있을시 수납처리하고 있음	
	○적은 인원(담당공무원)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사 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됨	○과내 자체조정운영 후 정원 증원시 업무분석을 선시 필요시 정원증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특별회계 (세출분야)	○주정차 단속의 지속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결정이 증가하고 미수납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의 징수결정액 384백만원에 대한 비용발생액은 304백만원으로 79.2%의 비율이 차지하는 바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운영비 등 일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차량압류 및 자진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절감토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채권관리	○보유채권중 대부분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확보 내용이 보증인으로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회수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실무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됨.	○체납자 및 보증인의 재산실태조사를 실시, 체납사유별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압류 및 독촉장발부 등 융자금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공유재산관리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요불급한 시유잡종재산인 보존 부적합 재산을 처분하고자 국내 최고의 자산처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OnBid 시스템을 통해 매각홍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각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추진 < 상반기> -홍보실적 : OnBid 등 2회(2004. 3. 2, 4.23) -처분(매각)실적 : 4필지 < 하반기> -보존 부적합 한 시유잡종재산을 매각시 적극적인 홍보(OnBid등)를 통해 처분(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기타의견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4회 추경 삭감요인 발생으로 경상경비의 예산편성시 신중 요망 ○시 발주사업은 회계관계법령에 의거 낙찰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자본보조금은 전액이 사업자와 보조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절감이 되지 않으므로 집행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	○소모성경비의 소요액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예산 편성운영토록 하겠음. ○보조금의 교부시 교부조건에 사업진도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토록 명시하여 교부하고 수시 사업현장 확인점검을 병행하며, ○보조금 정산시 정산서의 철저한 검증 및 확인(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하여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의 회수 등 엄격하게 확인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기타의견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세심한 노력으로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가급적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노력 필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주민숙원사업(pool)예산 관리철저 주민숙원사업(pool)예산은 주민숙원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나 실과사업소의 예산화보하지 못한 사업에 집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주 목적외 사업집행 엄격 배제되어야 할 것임	○사업예산의 주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기타의건	○예산집행율 저조 및 불용 발생 억제 대책 집행율이 전년 대비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과다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임	○예산편성지침 및 사업예산 편성시 노력하도록 의거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수시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예산서상의 각종 수치는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에 의거 편성하도록 요구되는 바, 추가경정 예산시에 자주 변동되고 연도폐쇄기에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소요예산 산출을 다양한 채널(예산편성기본지침, 타시군 사례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편성하고 있어 매년 불용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의 분석과 검토로 불용액이 발생치 않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계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건의사항	○소방도로개설시 당해연도 보상, 익년도 사업시행 방향으로 추진하여 보상 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공가 발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비행 장소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보상과 동시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망.	○사업추진시 보상완료와 동시에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를 적극 검토하여 공가 발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